

의안번호	2220461
의 퇴 인	송석준 의원
회 답 일	2026. 10. 1.
추 계 번호	26A39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6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 때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말함(제6항) - 1.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 2.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제6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말함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참고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 내역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3,153억원이 편성됨

[표 1]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회계, 코드)	내용	2026년 제1회추경예산	2027년 예산안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330,150	315,3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등의 규모,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수준 및 최저생계비의 지원 대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및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폐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폐업 건수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함
 - 또한, 개정안에 따른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주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